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의연월일 : 2016. 1. .

발 의 자 : 이학래 위원

1. 개정이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주민등록번호” 를 “생년월일” 로 개정(별지 제1호, 제2호)
 - 별지 제1호 “청원소개의견서” 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
 - 별지 제2호 “청원철회요구서” 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필요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[별지 제1호서식]

청 원 소 개 의 견 서

청 원 건 명				
청 원 인	주 소			
	성 명		생년월일	
소 개 의 원				
소 개 년 월 일	인			
소 개 의 견				

■ [별지 제2호서식]

청원철회요구서

청원건명			
청원인	주소		
	성명		생년월일
소개의원			
청원제출일자		청원철회일자	
철회 요구 사유			